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95
----------	-------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의자 : 이인영 · 강병원 · 강창일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이석현 · 이용득 · 이원욱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이후삼 · 이 훈 · 인재근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정세균 · 정은혜 · 정재호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조웅천 · 조정식 · 진선미
진 영 · 최운열 · 최인호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홍익표 · 황 희 의원
(1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안번호 제22762호) 발의됨.

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제2항제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
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의 전출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p> <p>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p> <p>1. ~ 10. (생 략)</p> <p><u><신 설></u></p> <p><u>11. (생 략)</u></p>	<p>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특별회계에의 전출</u></p> <p><u>12. (현행 제11호와 같음)</u></p>